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인도네시아

두주

1. 이 양허표는 아세안 회원국, 호주, 중국, 일본,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하여 각각 적용 가능한 6개 절로 구성된다.
2. 이 양허표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코드 열에 언급된 인도네시아 품목분류번호의 10자리 코드는 2012년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에 규정된 대로 인도네시아 국가 품목분류표에 기초한다.
3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
4. 이 양허표의 관세 철폐의 비선형 진행은 검토 대상이며, 그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내에 완료된다. 검토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모든 관련 세번의 선형 진행은 그러한 검토의 완료 후 3년 내에 개시된다.